

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

2000. 12. 22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0년 12월 16일

○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정례회

○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12.19)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박재식)

가. 제안이유

현재 운영중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지(현행 조례 부칙 제2조)됨에 따라

- 국가유공자·장애인·교통·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, 국가유공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
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며,
-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(1)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

-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

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, 취득세·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

⇒ 지방세법(제270조 제4항)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 삭제

-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감면

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이 사업에 직접 하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
⇒ 지방세법(제278조 제5항)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 삭제

-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

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
⇒ 지방세법(제273조 제1항)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 삭제

(2)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

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

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(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, 제18조의 4)

(3) 감면규정중 일부세목 및 조문 삭제

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

-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·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

취득세 ·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

⇒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
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(개정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,
감면조례 제2조제3항)

- 국가유공자가 취득 · 등록한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
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종전에 승합자동차로
분류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
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됨
에 따라

⇒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
범위에 규정하여 감면(제2조 제3항)

○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

-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(시각의 경우 4급까지)에
해당하는 자가 본인 ·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
등의 명의로 취득 하여 등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
대하여 취득세 ·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
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(제3조 제1항)

- 장애인이 취득 · 등록한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
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
되어 감면혜택을 받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
승합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전환
됨에 따라

⇒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
범위에 규정하여 감면(제3조 제1항)

-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
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
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부과 규정이 지방세법에서
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 규정 삭제(제11조 제1항)

-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받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
를 면제하던 것을 ⇒ 면허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로
전환(제22조 제2항)

(4) 감면범위 확대 및 감면 취득시점 확대

-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
분양 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
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주자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
하는 공동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
⇒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
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
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(제12조 제2항 제3호)

-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확대

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
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
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대체 입주하는 경우
에도 도세를 면제(제27조)

(5)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 등

○ 일부 감면 조문의 정리

법인 또는 비영리 사업자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
감면받은 후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
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(제5조~제9조, 제16조,
제17조, 제20조, 제25조, 제27조의 각 단서)

○ 용어 정리

관련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, 감면조례상의
용어 정리(제8조)

- 사회교육법 ⇒ 평생교육법
- 사회교육시설 ⇒ 평생교육시설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)

○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바

○ 상위 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,

-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자동 폐지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과
- 국가유공자 · 장애인 · 교통 · 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,
- 국가 유공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되는 분야는 폐지하면서
- 기타 조례의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

○ 본 도세 감면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, 세금을 면제받은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시 추징규정이 없어 단서조항으로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등과 형평성 유지

나. 수정 주요골자

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(안 제28조)

⇒ 부동산 취득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사용 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

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8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2000. 12. 19

제 안 자 : 박 종 기의원

1. 수정이유

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, 세금을 면제받은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시 추징규정이 없어 단서조항으로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등과 형평성 유지

2. 수정 주요골자

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(안 제28조)

⇒ 부동산 취득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

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8조(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)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 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 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.<u>(단서조 항신설)</u></p>	<p>제28조(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 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 세를 추징한다.</u></p>